

광고 이미지

기타

면 번호

2

심 의 의 결	심의결정	방송적합	2025년 5월 7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
	심의번호	25-E1-04-9	
	기타		

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② 원하심 경우,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<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필 심의번호> 문구로 한정합니다.

단, 방송 및 패키지, 기타 포장용기에는 심의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③ 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 및 필증 이미지와 기구 로고 사용 등은 불허합니다.

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.

⑤ 필증을 위·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.

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(02-2144-4300/4304)로 연락 바랍니다.